

# 2009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9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0.05.10~05.29(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유인환(총괄)
  - 검사위원 : 정대교(일반회계 세입)
  - 검사위원 : 임준환(일반회계 세출)
  - 검사위원 : 김시한(특별회계, 기금)
  - 검사위원 : 김진석(재산, 물품, 채권·채무, 예산)

## 평창군결산검사위원

# 2009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 창 군 수 귀하

2010년 5월 29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0년 5월 10일부터 2010년 5월 29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사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0년 5월 29일

대표감사위원 유 인 환 (인)

감사위원 정 대 교 (인)

감사위원 임 준 환 (인)

감사위원 김 시 한 (인)

감사위원 김 진 석 (인)

2009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4
2) 세출	5
2. 일반회계	
1) 세입	6
2) 세출	6
3. 특별회계	
1) 세입	7
2) 세출	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9
2) 채권	9
3) 채무	10
4) 공유재산	10
5) 물품	11
5. 세입·세출외현금	11
6. 검사결과	12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5

# 2009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9연도의 일반회계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8)	461,257,145,670	482,736,036,697	474,727,048,452	767,166,300	7,241,821,945
당해년도 (2009)	396,063,067,450	400,706,659,812	391,820,314,383	228,497,840	8,657,847,589

#### 가. 세입결산 개요

- 2009년도 실제수납액은 391,820,314,383원으로 예산현액의 9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 2008년도

- 실제수납액 : 474,727,048,452원 (예산현액의 103%)
- 징수결정액 : 482,736,036,697원 (예산현액의 104%)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8)	289,051,563,000	172,205,582,670	461,257,145,670	376,261,426,624
당해년도(2009)	324,810,234,000	71,252,833,450	396,063,067,450	351,187,688,473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71,252,833,450 (64,879,160)	13,742,885,596	98,465,621,828	1,294,464,074	25,983,203,464
35,175,082,100 (466,101,473)	9,700,296,877	40,632,625,910	1,121,275,910	4,876,469,478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한 324,810,23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71,252,833,4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6,063,067,450원임.
- 지출액은 351,187,688,473원으로 예산현액의 89%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㉑)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8)	461,257,145,670	71,252,833,450 (64,879,160)	38,907,422,790 (64,879,160)	8,733,841,190	23,611,569,470	15.4%
당해연도 (2009)	396,063,067,450	40,632,625,910 (466,101,473)	14,762,685,027 (466,101,473)	4,722,929,060	15,223,366,540	8.8%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년도 (2008)	390,108,715,280	409,982,048,718	404,280,334,513	765,370,750	4,936,343,455
당해연도 (2009)	315,951,088,530	319,681,147,614	312,609,684,805	228,497,840	6,842,964,969

####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312,609,684,805원으로 예산현액의 98.9%이고, 징수결정액은 319,681,147,614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8%임.

#### ※ 2008년도

- 실제수납액 : 404,280,334,513원 (예산현액의 104%)
- 징수결정액 : 409,982,048,718원 (예산현액의 105%)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8)	237,737,342,000	152,371,373,280	390,108,715,280	325,220,513,054
당해연도(2009)	259,898,505,000	56,052,583,530	315,951,088,530	285,259,613,741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56,052,583,530	8,835,618,696	79,059,821,459	877,297,754	22,129,940,175
22,402,832,830	8,288,641,959	27,350,071,064	1,007,085,915	3,940,152,319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59,898,50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052,583,5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5,951,088,530원임.
- 이월사업비는 22,402,832,830원으로 예산현액의 7%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8)	390,108,715,280	56,052,583,530	34,721,696,080	8,278,163,330	13,052,724,120	14.3%
당해연도 (2009)	315,951,088,530	22,402,832,830	9,549,137,870	4,101,241,560	8,752,453,400	7%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8)	71,148,430,390	72,753,987,979	70,446,713,939	1,795,550	2,305,478,490
당해연도 (2009)	80,111,978,920	81,025,512,198	79,210,629,578	-	1,814,882,62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79,210,629,578원으로 예산현액의 98.8%이며, 징수결정액은 81,025,512,198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8%임.

※ 2008년도

- 실제수납액 : 70,446,713,939원 (예산현액의 99%)
- 징수결정액 : 72,753,987,979원 (예산현액의 102%)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8)	51,314,221,000	19,834,209,390	71,148,430,390	51,040,913,570
당해년도(2009)	64,911,729,000	15,200,249,920	80,111,978,920	65,928,074,732
익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5,200,249,920 (64,879,160)	4,907,266,900	19,405,800,369	417,166,320	3,853,263,289
12,772,249,270 (466,101,473)	1,411,654,918	13,282,554,846	40,089,890	936,317,159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64,911,72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200,249,9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0,111,978,920원임.
- 이월사업비는 12,772,249,270원으로 예산현액의 15.9%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8)	71,148,430,390	15,200,249,920 (64,879,160)	4,185,726,710 (64,879,160)	455,677,860	10,558,845,350	21%
당해연도 (2009)	80,111,978,920 (466,101,473)	12,772,249,270 (466,101,473)	5,679,648,630 (466,101,473)	621,687,500	6,470,913,140	15.9%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1) 기 금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8)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9)
		계	수납액	지출액	
계	3,058,103,841	1,379,878,160	2,121,195,240	741,317,080	4,437,982,001
식품진흥기금	105,218,529	△1,651,057	6,406,583	8,057,640	103,567,472
사회복지기금	2,381,639,001	1,325,612,726	1,436,710,736	111,098,010	3,707,251,727
재난관리기금	571,246,311	△444,083,509	178,077,921	622,161,430	127,162,802
체육진흥기금	-	500,000,000	500,000,000	-	500,000,000

####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개로서  
기금현재액은 2008년도 3,058,103,841원 보다 1,379,878,160원이 증가한 4,437,982,001원을 관리하고 있음.

### 2) 채 권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8)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9)
합 계	5,885,239,104	1,353,885,032	1,064,865,155	6,174,258,981
일반회계	3,776,360,450	446,897,000	145,674,760	4,077,582,690
특별회계	2,108,878,654	87,209,909	908,062,443	1,288,026,120
기 금	-	819,778,123	11,127,952	808,650,171

####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8년말 현재액 5,885,239,104원에서
- 2009년도에 1,353,885,032원이 발생, 1,064,865,155원이 소멸되어
-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74,258,981원임.

### 3) 채 무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9,801,006,000	11,503,016,000	13,000,000,000	1,496,984,000	△1,538,000	21,305,560,000
일반회계	6,430,606,000	12,595,816,000	13,000,000,000	404,184,000	△1,538,000	19,027,960,000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3,370,400,000	△1,092,800,000	-	1,092,800,000	-	2,277,6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8년도말 현재액 9,801,006,000원에서
- 2009년도에 13,000,000,000이 발생, 1,496,984,000이 소멸되어
-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305,560,000원임.

###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8년말현재액	2009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1,779,858,422,294	1,978,178,341,258	198,319,918,964
행정 재산	계	1,674,186,183,249	1,883,901,592,846	209,715,409,597
	공공용재산	1,638,315,855,971	1,847,218,082,178	208,902,226,207
	공용 재산	34,045,800,692	34,857,779,284	811,978,592
	기업용재산	1,824,526,586	1,825,731,384	1,204,798
일반 재산		105,672,239,045	94,276,748,412	△11,395,490,633

가.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008년말 현재액1,779,858,422,294원에서 198,319,918,964원이 증가한 1,978,178,341,258원으로

- 토지 127,238,000㎡ 329,806,858,836원
- 건물 189,663㎡ 196,716,044,957원
- 기타 1,356,086건 1,451,461,742,465원임.

##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9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33종	수량	305	66	1	67	2	6	8	364
	금액	2,247,217	460,074	59,272	519,346	39,004	175,031	214,035	2,552,528

가.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8년말 현재액 2,247,217,620원보다 305,310,800원이 증가한 2,552,528,420원으로서 취득 519,346,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214,035,200원 처분함.

##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9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2,696,857,296	△623,000,807	6,551,954,184	7,174,954,991	2,073,856,489
위 탁 금	178,669,234	△8,412,750	115,564,800	123,977,550	170,256,484
보 증 금	643,550,690	△197,041,260	679,823,510	876,864,770	446,509,430
보 관 금	1,743,299,020	△403,529,689	4,046,946,634	4,450,476,323	1,339,768,681
잡종금등기타	131,338,352	△14,017,108	1,709,619,240	1,861,597,834	117,321,244

가.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73,856,489원으로 2008년도말 2,696,857,296원보다 623,000,807원이 감소함.

※ 읍·면, 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금액임.

## 6. 검사결과

### \* 총 평

- 2009년도 일반회계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등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액이 전년대비 50% 감소하고 설계변경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결산의 적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특정 부서의 공무원들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이 요구됨

-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 실제수납액은 312,610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9,68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8%로 세입상태가 양호하였음.
  - 예산액은 259,898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05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5,951백만원으로 지출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나타났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 세입결산액은 79,21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928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은
  - 현재액 2,074백만원으로 2008년보다 62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예산이 이월되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주요 지적사항

###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처리

-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있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효석문화제 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조례제정 등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2009회계연도에도 시정하지 아니함.

### ○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법령이나 위임조례의 근거 없이 읍·면장에게 청산토록 하여, 군에서 직접 환지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 청산완료토록 지적, 징수대상자와 교부대상자에 납부 및 청구독려 하여 2009년 내 청산완료 한다는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환지청산계획을 읍·면장에게 보낸 후 사업시행자(건설방재과)는 처리실적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

### ○ 임업진흥지역 정비용역 추진 부적정

- 임업진흥지역정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이 계상되어 변경계약 후 추진해야 함에도 용역이 준공되어 강원도에 제출 후 2차 계약을 하는 등 업무 등 부적정하게 추진

### ○ 산지구분 실시 및 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 부적정

- 산지구분실시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을 변경계약 함에 있어 개별규제지역(임업진흥지역)해제를 위한 용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0.02.04변경계약 시 절대공기가 90일 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30일을 추가한 220일로 부당하게 변경계약(2009.12.15 이전에 임업진흥지역 해제용역이 완료됨)
- 이에 따라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평창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009.12.31 준공목표로 진행되었으나 2009.11.20 사업 중지 후 검사일 까지 진행되지 않아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등 부적정 하게 추진

○ 지방세 이월액 증가

- 2008년 결산대비 2009년 이월액이 630,505,980원이 증가 이월액 최소 노력 필요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소홀

- 각 세외수입 주관 과에서 체납액 관리소홀(이월액 40억)
- 특히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대상임에도 징수율 저조(2009년 46%)
- 채권확보 되지 않은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결손처분 저조 (2009년 결산기준 31백만원)

○ 주택용자금 회수

- ' 82 ~ ' 86(5년) 50동분 용자금 미수금이 1,278,277천원으로 경매처분 시 근저당 채권최고액만 받게 되어 채권의 추가확보등 특별대책이 요구됨

## 지적(건의)사항 및 검사자 의견

## 지 적 ( 건 의 )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처리(기술지원과)	
2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건설방재과)	
3	임업진흥지역 정비용역 추진 부적정(산림과)	
4	산지구분 실시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 부적정(산림과)	
5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추진 부적정(산림과)	
6	효석문화제 보조금집행 부적정(관광경제과)	
7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부당집행(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	
8	일시차입금 이자지출 소홀(재무과)	
9	이사 등 간접보상비 부당지급(문화체육과)	
10	주요사업(총사업비20억 이상)결산결과 미투자 다수발생 -결산부속서류 참조(해당 실·과·소)	
11	50%미만 보조금 집행사례 다수발생(별지참조)	

번호	제 목	비고
12	예산 100%미집행사례 다수 발생(별지참조)	
13	결식아동 및 학기 중 토·일·공 휴일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 (주민생활지원실)	
14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재배정 회계절차 미이행(기술지원과)	
15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방림, 대화, 진부, 대관령)	
16	지방세 이월액 증가(재무과)	
17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소홀(재무과, 해당 실·과·소)	
18	국민주택 용자금 회수(도시과)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 소홀(민원봉사과)	
2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읍·면)	
21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 부적정(환경과)	
22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일반재산 대부료 체납액 관리소홀(재무과)	
23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상하수도사업소)	
24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주민생활지원실)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

○ 제 목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처리

○ 현 황

-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사업 301-12(기타보상금) 130,000천원

○ 문제점

-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있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효석문화제 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조례제정 등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2009회계연도에도 시정하지 아니함.

## ※ 감사자 의견

○ 조례를 제정하거나 효석문화제 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2

○ 제목 :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 현황

- 대화면 세입세출외현금 : 97,261,731원
- 환지청산 계획수립 : 2008.06.24

○ 문제점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법령이나 위임조례의 근거 없이 읍·면장에게 청산토록 하여, 군에서 직접 환지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 청산완료토록 지적, 징수대상자와 교부대상자에 납부 및 청구독려하여 2009년 내 청산완료 한다는 처리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환지청산계획을 읍·면장에게 보낸 후 사업시행자(건설방재과)는 처리실적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

## ※ 검사자 의견

○ 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리하여 청산완료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3

○ 제목 : 임업진흥지역 정비용역 추진 부적정

○ 현황

- 도 급 액 : 157,775천원
- 1차 계약 : 2009.05.18, 100,000천원
- 2차 계약 : 2009.12.28, 57,775천원
- 준공검사 : 2009.12.30
- 강원도 용역결과제출 : 2009.12.15

○ 문제점

- 임업진흥지역정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이 계상되어 변경계약 후 추진해야 함에도 용역이 준공되어 강원도에 제출 후 2차 계약을 하는 등 업무 등 부적정하게 추진

## ※ 감사자 의견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요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4

○ 제목 : 산지구분 실시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  
부적정

○ 현황

- 도 급 액 : 85,978천원
- 용역기간 : 2009.11.26 ~ 2.23(절대공기 90일)
- 변경계약 : 2009.11.26 ~ 2010.7.3(220일)

○ 문제점

- 산지구분실시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을 변경계약 함에 있어 개별규제지역(임업진흥지역)해제를 위한 용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0.02.04변경계약 시 절대공기가 90일 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130일을 추가한 220일로 부당하게 변경계약(2009.12.15 이전에 임업진흥지역 해제용역이 완료됨)
- 이에 따라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평창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009.12.31 준공목표로 진행되었으나 2009.11.20 사업 중지 후 검사일 까지 진행되지 않아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

## ※ 검사자 의견

○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5

○ 제목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추진 부적정

○ 현황

- 자연휴양림조성사업 : 2009.04.30~2010.04.30
- 도사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2009.12.02~2010.05.01
- 공사중지일 : 2010.01.01~

○ 문제점

- 토목건축공사 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 2009.12.19 최저기온  $-16.8^{\circ}\text{C}$ , 최고기온  $-9.6^{\circ}\text{C}$ ,
- 2009.12.20 최저기온  $-14.1^{\circ}\text{C}$ , 최고기온  $-5.0^{\circ}\text{C}$ (대관령기상대자료)임에도 2010.01.01~공사중지명령이 되는 등 부적정 하게 추진

## ※ 검사자 의견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품질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6
- 제목 : 효석문화제 보조금집행 부적정
- 현황

(단위 :원)

세부사업(지출)내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보조금정산서
주차장정비 장비대	500,000	1,595,000
무대리모델링(정비)	5,000,000	3,444,800
전기조명	1,780,000	16,879,000

## ○ 문제점

- 효석문화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같은 세부사업에 면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보조금이 같이 집행되어 정확한 집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 검사자 의견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보조금이 함께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분시행하거나 효석문화제 보조금으로만 행사진행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7

○ 제목 :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부당집행

○ 현황

- 예산액 : 10,921,406천원
- 집행액 : 10,061,927천원

○ 문제점

- 제1관서의 경우 관서의 장이 경리관으로 관직이 지정되어 계약 등의 회계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2009.12.24 이전까지 제1관서로 지정됨이 없이 일반회계 예산을 계약 등 예산 부당하게 집행

## ※ 감사자 의견

- 제1관서에 해당되는 부서를 신설 시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함께 개정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8

○ 제목 : 일시차입금 이자지출 소홀

○ 현황

- 일시차입한도액 : 6,541백만원(제1회 추경 시 의회의결)
- 1차 차입 : 2009.04.27 6,500백만원, 5.29이자지급
- 2차 차입 : 2009.06.16 6,500백만원, 7. 6이자지급

○ 문제점

- 일시차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자를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이자를 계상치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일시차입금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발생

## ※ 감사자 의견

- 예산편성요구 시 적정한 이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일시차입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9

○ 제목 : 이사 등 간접보상비 부당지급

○ 현황

- 지급원인행위 : 대관령면 황계리 366-3 분묘 2,692,830원
- 지출증빙서 : 대화면 대화리 체육공원 내 분묘 2,692,830원

○ 문제점

- 대화체육공원내 분묘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 원인행위 시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분묘를 보상하겠다고 결의 후 지출증빙서류는 대화체육공원 내 분묘 보상비로 부당하게 지급

## ※ 검사자 의견

○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0

○ 제목 : 주요사업(총사업비20억 이상)결산결과 미투자 다수발생

○ 현황

- 대상사업 : 32개 사업, 480,232백만원
- 기 투자 : 133,462백만원
- 2009투자 : 103,871백만원
- 미 투자 : 242,899백만원

○ 문제점

- 주요사업(총사업비 20억 이상) 결산결과 50%의 사업비가 미투자 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검사자 의견

- 신규투자 사업보다 주요사업완료 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별대책이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1

○ 제목 : 50%미만 보조금 집행사례 다수발생

○ 현황

- 보조금 수령액 : 414,239천원
- 집행액(이월액포함) : 94,071천원
- 잔액 : 320,168천원

○ 문제점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후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50% 미만 보조금 집행사례가 16건 발생,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초래

## ※ 감사자 의견

- 보조금 수령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후 군비부담액 등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2
- 제목 : 예산 100%미집행사례 다수 발생
- 현황
  - 일반회계 : 22건, 1,791,100천원
  - 특별회계 : 3건, 227,339천원
- 문제점
  - 예산성립 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추경예산 시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100%미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

## ※ 감사자 의견

-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경예산 요구 시 예산판단을 정확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3

○ 제 목 : 결식아동 및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

○ 현 황

- 결식아동지원 재배정 : 65,700천원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 49,150천원

○ 문 제 점

-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자활센터에서 급식 후 8개 읍·면장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급식단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 ※ 검사자 의견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4

○ 제목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재배정 회계절차 미이행

○ 현황

- 예산액 : 375,000천원
- 읍면재배정 : 363,600천원(4회)

○ 문제점

- 제1관서의 장이 읍·면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경우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하나 미이행

## ※ 감사자 의견

○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등 실무부서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5

○ 제목 :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 현황

- 예산액 : 읍·면당 3억원

○ 문제점

-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물품구입, 꽃묘구입, 마을소유펜션(수익사업) 지원, 제설장비구입 또는 이전장착, 측량수수료지급 등 사업목적과 불부합한 용도에 사업비 집행

## ※ 감사자 의견

○ 소규모숙원사업 집행 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처리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6

○ 제 목 : 지방세 이월액 증가

○ 현 황

- 2008년 결산 지방세 이월액 2,209,213,920원
- 2009년 결산 지방세 이월액 2,839,719,900원

○ 문 제 점

- 2008년 결산대비 2009년 이월액이 630,505,980원이 증가 이월액 최소 노력 필요

## ※ 감사자 의견

-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조건인 만큼 자주재원인 균세이월액이 2008년 대비 6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2010년도에는 이월액감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7

○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소홀

○ 현 황

- 각 세외수입 주관 과에서 체납액 관리소홀(이월액 40억)
- 특히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대상임에도 징수율 저조(2009년 46%)
- 채권확보 되지 않은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결손처분 저조 (2009년 결산기준 31백만원)

○ 개선사항

-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임대료 등은 100% 징수
- 과태료 징수율 70% 목표
-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대대적인 결손처분

## ※ 감사자 의견

-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 소관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징수에 소홀하여 2009년 결산기준 40억을 이월시켰으며,
-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46% 수준으로 각 과태료 부과징수부서에서 각별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2009년 결산 이월액 중 30%이상 결손처분 노력 필요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8

○ 제목 : 국민주택 용자금 회수

○ 현황

- ' 82 ~ ' 86(5년) : 50동
- 계 : 1,278,277천원
  - 원금 : 218,199천원
  - 이자 : 194,858천원
  - 연체이자 : 865,220천원

○ 문제점

- 경매처분 시 근저당 채권 최고액만 배당받게 됨
- 채납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 검사자 의견

- 채납자에 대한 선별적 경매를 진행
- 채납자와 협의 채권의 추가 확보 방안 강구, 조기에 완료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9

○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 소홀

○ 현 황

(단위 :원)

주 소	납부자명	금 액	부과일자	비고
계	5건	880,344,4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3-23	(주)한국포에이그룹	524,713,460	'09.01.05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2	(주)이랜드리테일	233,173,000	'09.05.06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8층	(주)포사이드코리아	121,006,650	'09.07.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9 르메이에르오피스텔 1005호	(주)다진인터내셔널	1,128,450	'09.08.20	
서울 소초 서초동 1361-9 서광빌딩 5층	서창이엔씨	322,880	'09.10.13	

○ 문 제 점

- 체납액 징수소홀
- 채권 미확보

## ※ 검사자 의견

-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정리
- 물건 등 채권 확보하여 징수철저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20
-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 현 황

(단위 : 원)

구분	계	군유재산대부료			군유재산 연 체 료	군유재산 변 상 금	주민등록 과 태 료	비고
		계	2009년	과년도				
계	53,934,240	40,860,500	17,595,570	23,264,930	1,485,080	11,176,260	412,400	
평창	3,037,450	3,037,450	1,296,380	1,741,070				
방림	170,000						170,000	
대화	1,506,900	1,506,900	1,010,310	496,590				
봉평	6,280,440	6,280,440	1,802,990	4,477,450				
진부	3,175,260	2,932,860		2,932,860			242,400	
대관령	39,764,190	27,102,850	13,485,890	13,616,960	1,485,080	11,176,260		

- 문 제 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미흡

## ※ 감사자 의견

- 특별대책 강구 체납액 징수
- 채권확보 압류건 과감히 정리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21

○ 제목 :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 부적정

○ 현황

- 2009년도 세입 61,142천원 예산 계상
- 2010년도 부과 : 45,269,760원
  - 1월분 : 9,279,760원 (171건)
  - 2월분 : 10,033,280원 (163건)
  - 3월분 : 9,669,920원 (159건)
  - 4월분 : 7,194,560원 (173건)
  - 5월분 : 9,092,240원 (178건)

○ 문제점

- 2009년 연말까지 부과준비 관계로 실제 부과 금액이 없음으로 세입예산 미정리
- 2010년 1~5월분까지 부과 되었으나 세입예산 미계상 (추정세입금 130,000천원)

## ※ 감사자 의견

○ 2009년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 정리필요

○ 2010년 추경 시 세입예산 계상

○ 강원도 자치단체 부과

- 원주시 : 2008년 8월, 태백시 : 2009년 1월, 평창군 : 2010년 1월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22

○ 제 목 :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일반재산 대부료 체납액 관리소홀

○ 현 황

▶ 부과징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체 납 액	징 수 율
현년도	153,440,540	145,684,520	7,756,020	94.95%
과년도	16,496,340	1,405,150	15,091,190	8.52%

(2009회계연도 결산기준)

▶ 체납처분현황

(단위 : 원)

구 분	압 류		결 손 처 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현년도	-	-	-	-	
과년도	42	6,131,930	9	1,713,360	

▶ 적극적인 채권확보(압류 등)노력 부족

▶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미이행

○ 문제점

- 기존 동산(자동차)위주의 소극적 압류보다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수단 마련
-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 ※ 감사자 의견

○ 특별 징수대책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23

○ 제목 :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

○ 현황

- 하수도(지하수)사용량 부과 및 징수내역
  - 부과액 : 445,853,450원
  - 수납액 : 438,967,320원
  - 미수액 : 6,886,130원

○ 문제점

- 부과·징수는 군행정정보시스템으로 운영관리
- 프로그램 미비로 과년도 분의 부과·수납 체계 미흡

## ※ 감사자 의견

○ 시스템의 보완 간소화 후 체납액 발생치 않도록 조치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24

○ 제목 :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

○ 현황

- 미수금현황

· 계 : 70,611,670원

· 부당이득금 : 68,826,310원

· 구 상 금 : 1,785,360원

○ 문제점

- 지자체에서 대상여부 및 사실조사 확인 전 의료비 지급

- 지급 후 징수하여야 하나,

- 대상자 모두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로 소액을 분납하는 실정임

## ※ 검사자 의견

○ 중앙부처의 심사평가원의 인원을 증원

○ 의료기관이 진료와 동시 대상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예방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미처리 (가산메밀꽃단지육성지원 사업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 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규정에 없는 사업비를 보상금으로 지급</li> <li>○조례를 제정하거나 효석문화제 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군지역축제지원 조례 제정 (관광경제과소관) - 6~7월 중 의회 상정계획</li> </ul>	기술지원과
2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법령이나 위임조례의 근거 없이 읍·면장에게 청산 토록 하여 군에서 직접 환지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 청산완료토록 지적함.</li> <li>○이후, 환지청산계획을 읍·면장에게 보낸 후 사업시행자(건설방재과)는 처리실적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li> <li>○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리하여 청산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화면의 환지청산금에 대한 징구 및 교부대책을 수립 해결할 계획임.</li> </ul>	건설방재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3	임업진흥지역 정비용역 추진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진흥지역정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이 계상되어 변경계약 후 추진해야 함에도 용역이 준공되어 강원도에 제출 후 2차 계약을 하는 등 업무 등 부적정하게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경 시 사업예산을 검토·회의하여 추경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 철저대비</li> </ul>	산림과
4	산지구분 실시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구분실시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용역을 변경계약 함에 있어 개별규제지역(임업진흥지역)해제를 위한 용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절대공기를 130일 연장하여 부당하게 변경계약 함에 따라,</li> <li>○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평창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2009.11.20 사업중지 후 검사일 까지 진행되지 않아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등 부적정 하게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역시행 시 용역기간을 엄밀하게 사전검토 하고,</li> <li>○용역기간연장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만 연장토록 함.</li> </ul>	산림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5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1개 사업 추진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목·건축공사 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기온(저온)과 상관없이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li> <li>○향후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동절기 이전 조기사업완료</li> </ul>	산림과
6	효석문화제 보조금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석문화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같은 세부사업에 면장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와 보조금이 같이 집행되어 정확한 집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li> <li>○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보조금이 함께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분시행 하거나 효석문화제 보조금으로만 행사진행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석문화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과 자부담으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일부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li>○향후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숙원사업비와 축제행사비로 구분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맞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음.</li> </ul>	관광경제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7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부당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관서의 경우 관서의 장이 경리관으로 관직이 지정되어 계약 등의 회계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li> <li>○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2009.12.24 이전 까지 제1관서로 지정됨이 없이 일반회계 예산을 계약 등 예산 부당하게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 시 경리부서 계약업무 폭주로 마을상수도 등 일반회계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시적으로 담당하게 됨.</li> <li>○ 2008년 7월경 관직 지정 없이 계약 등 회계 업무 집행사실을 인지, 재무과로 업무환원 협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였음.</li> <li>○ 2009년 상반기부터 평창군재무회계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2009.12.24일 상하수도사업소를 제1관서로 관직 지정하여 완료됨.</li> </ul>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8	일시차입금 이자지출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차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자를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이자를 계상치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일시차입금 운영을 소홀히 함.</li> <li>○ 예산편성요구 시 적정한 이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일시차입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예산 편성(2008년 10월)시 조기집행으로 일시차입상황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동일사례 없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음.</li> </ul>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9	이사 등 간접보상비 부당지급	<p>○대화체육공원내 분묘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 원인행위 시 대관령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분묘를 보상하겠다고 결의 후 지출증빙서류는 대화체육공원 내 분묘 보상비로 부당하게 지급</p>	<p>○대화체육공원조성사업이 2001. 9월에 완료된 이후 2008. 4. 2일 유연분묘를 이전한 주민으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 지급 요청이 있었으나 관련 예산이 없었음.</p> <p>○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조성사업의 보상금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었음.</p> <p>○향후 사업비 지출 이전에 관련 규정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p>	문화체육과
10	<p>주요사업(총사업비20억 이상)결산결과 미투자 다수발생</p> <p>-결산부속서류 참조</p>	<p>○주요사업(총사업비 20억 이상) 결산결과 50%의 사업비가 미투자 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p> <p>○신규투자 사업보다 주요사업완료 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별대책이 요구 됨.</p>	<p>○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 외 31개 사업 중 -문화복지센터건립 외 11개 사업은 90%이상 진행되어 기간 내 완료가능</p> <p>-노인여가시설신축 외 19개 사업은 사업완료일 미도래로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음.</p>	<p>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p>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1	50%미만 보조금 집행사례 다수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후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50%미만 보조금 집행사례가 16건 발생,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초래</li> <li>○보조금 수령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후 준비부담액 등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외 15개 사업</li> <li>-보조금 수령 후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주민생활지원실 산림과, 건설방재과, 보건사업과, 기술지원과
12	예산 100%미집행사례 다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성립 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추경예산 시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100% 미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송수행자포상금 외 24개 사업</li> <li>-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li> </ul>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3	결식아동 및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급 부적정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자활센터에서 급식 후 8개 읍·면장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 되고, 급식단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부적정 하게 추진	○2010년부터 추진되는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급식지원단체로(평창지역자활후견기관) 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아동급식비를 일괄 지급함.	주민생활지원실
14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재배정 회계절차 미이행	○제1관서의 장이 읍·면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경우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하나 미이행	○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의 범위에 포함됨. ○향후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 교부 시 관련 실·과와 합의 이행하겠음.	기술지원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5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물품구입, 꽃묘구입, 마을소유 펜션(수익사업)지원, 제설장비 구입 또는 이전장착, 측량수수료지급 등 사업목적과 불부합한 용도에 사업비 집행	○소규모숙원사업 집행 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겠음.	방림면, 대화면, 진부면, 대관령면
16	지방세 이월액 증가	○2008년 결산대비 2009년 이월액이 630,505,980원이 증가 이월액 최소노력 필요	○2010년 결산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7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 소관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징수에 소홀하여 2009년 결산기준 40억을 이월시켰으며,</li> <li>○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46% 수준으로 각 과태료 부과징수부서에서 각별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li> <li>○2009년 결산 이월액 중 30%이상 결손처분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외수입징수대책단을 구성하여 실·과 미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li> <li>○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겠음.</li> </ul>	재무과/ 해당실·과·소
18	국민주택 용자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매처분 시 근저당 채권 최고액만 배당 받게 됨.</li> <li>-채납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으로 채납자에 대한 선별적 경매를 진행</li> <li>○채납자와 협의 채권의 추가 확보 방안 강구, 조기에 완료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 실시 : 2010년 7월까지</li> <li>-조사결과에 따라 채권 추가확보가 가능한 채납자에 대하여는 법적절차 진행 (※ 이의신청 시 법원판결을 거쳐야 함)</li> <li>-상환능력이 없는 세대는 경매를 집행하고 차액은 결손처분 하여 조기에 마무리</li> <li>○ 감액처분을 병행하여 집행</li> <li>-상환의지는 있으나 전액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채납자 등을 선별하여 감액처분</li> </ul>	도시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채납액 징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납액 징수소홀 - 채권 미확보 채납액 징수대책 강구 정리</li> <li>○물건 등 채권 확보하여 징수철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부 독촉을 수시로 하여 과징금 납부를 유도 -채납액 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법인 및 대표이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한 후 압류조치</li> <li>-확보된 압류재산은 강제집행 등으로 채납 정리</li> </ul>	민원봉사과
20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외수입 채납액 징수미흡 -특별대책 강구 채납액 징수</li> <li>○채권확보 압류건 과감히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압류건 채납 정리 및 채납자 지속 독려 예정 -세외수입 채납자 납부 독촉 고지</li> <li>-독촉고지 후에도 대부료를 장기채납 시 지방세 채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징수</li> </ul>	해당실·과 ·소·읍·면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21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입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연말까지 부과준비 관계로 실제 부과금액이 없음으로 세입예산 미정리</li> <li>-2010년 1~5월분까지 부과되었으나 세입예산 미계상(추정세입금 130,000천원)</li> <li>○ 2010년 추경 시 세입예산 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회 추경 시 세입예산 계상처리(130,000천원)</li> </ul>	환경과
22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대부료 채납액 관리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동산(자동차)위주의 소극적 압류보다 부동산, 금융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수단 마련</li> <li>-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납액 징수 방안 강구</li> <li>-재산조회 후 동산위주 보다는 부동산 위주 압류처리로 실효성 확보</li> <li>-지속적인 납부 독촉</li> <li>○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실시</li> </ul>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23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징수는 군행정정보시스템으로 운영관리</li> <li>-프로그램 미비로 과년도 분의 부과·수납 체계 미흡</li> <li>○시스템의 보완 간소화 후 체납액 발생치 않도록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있는 상수도급수구역에 대하여는 수도행정부서에서 병행하여 처리를 하지만,</li> <li>○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부서에서 관리운영 하여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하수처리구역 내 상수도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금에 대하여는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겠음.</li> </ul>	상하수도사업소
24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에서 대상여부 및 사실조사 확인 전 의료비 지급</li> <li>-지급 후 징수하여야 하나,</li> <li>-대상자 모두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로 소액을 분납하는 실정임</li> <li>○중앙부처의 심사평가원의 인원을 증원 의료기관이 진료와 동시 대상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예방 함이 타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이 진료와 동시에 보장기관에 통보 하더라도, 단순사고의 경우 사례관리사의 판단으로 결정 통보할 수 있지만, 사건사고의 경우 경찰관서의 사건 조사 후 처분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후 관리로 이루어져, 부당이득금 발생이 불가피함.</li> <li>○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들에게 치료비를 일시납으로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수조치 하겠음.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 10년</li> </ul>	주민생활지원실